

## 프로젝트 실행비 예산 편성 기준 안내

### □ 프로젝트 실행비 편성 안내

- 연구·프로젝트 실행, 진행 및 발표를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.
  - 싹수(청년예술인/단체) 프로젝트는 1가지 유형으로 월 활동비는 50만원씩 4개월간 지급되며, 프로젝트비는 300만원으로 일괄 지원합니다.
  - 싹터(문화거점형) 프로젝트는 총 2가지 유형이며 프로젝트비는 400만원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. 심사 이후 프로젝트 금액이 일부조정될 수도 있습니다.
- 싹터(문화거점형) 문의 : 02-6289-3012
  - 싹수(청년예술인/단체) 문의 : 02-6289-3005

### 가. 공통기준

- 1) 사례비는 총지원금액의 **30%**까지 편성이 가능
- 2) 사례비 **지출증빙 필수서류**
  - 대상자의 이력서(프로필), 신분증 및 통장사본, 계좌이체 확인증 등 증빙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
  - ※ 대상자의 이력서의 이력과 사례비 기준이 일치해야 함
- 3) 해당 공간의 **공간운영인력**의 단순 인건비 편성은 불가능

### 나. 강사수당 지급기준

#### 1) 강의(공통기준)

- 강의시간 산출에 있어 30분 미만은 강의료가 무료이며,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함
- 동일 강사의 중복 출강 시 강의시간 인정 및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확인표

강사	강의일자	교육대상	교육내용(주제)	중복지급(출강) 인정여부
동일	동일	동일	동일	×
		동일	다름	○
		다름	동일	○
다름	다름	불문		○
		불문		○

#### 2) 강의 수당

- 강사수당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.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

## 1. 주요 집행기준

### ※ 기타 단가기준 참고사항

- \* **본 단가기준은 상한선**으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, 감한 지급 가능  
(단, 단기근무자 인건비 지급기준은 감할 수 없음. 서울시 생활임금 준수)
- \* 각 사업별 상황에 맞게 조정하되, 상한액 이상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

### ○ 각종 회의(컨설팅 등 자문회의, 간담회 등) 참석비

#### -자문회의 지급기준

구분	단 위	수 당 (기준)	지급기준	비 고
자문회의	오프라인 (대면)	기본료 100,000원 초과 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</li> <li>◦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</li> <li>◦ 정책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</li> </ul>	기본료: 최초 2시간 기준 최대 1시간까지 초과분 지급 가능 ※ <b>1일 최대 3시간</b>
	온라인 (비대면)	기본료 50,000원 초과 20,000원		

1. 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참석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필수로 함
2. 변호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건축가,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

#### -강의료 지급기준

구분	역할	단 위	수 당 (기준)	지급기준	비 고
강의 등 (포럼/세미나)	주제발표자	1일	기본료 300,000원 초과 1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을 위한 강의 및 포럼/세미나/심포지엄/워크숍</li> <li>◦ 원고료 및 이력서 포함</li> <li>◦ 정책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등</li> </ul>	기본료: 최초 2시간 기준 최대 1시간까지 초과분 지급 가능 ※ <b>1일 최대 3시간</b>
	사회/지정토론자		기본료 200,000원 초과 100,000원		
	퍼실리테이터		기본료 150,000원 초과 50,000원		

### ○ 인력 용역비

#### - 무대인건비 1\_(일반)크루

구 분	수 당 (기준)	비 고
무대.조명(음향) 크루	110,000원	◦ 1일 8시간 기준

#### - 단기근무자 인건비

구 분	수 당 (기준)	비 고
단기근무자 (2022년)	10,770원 (시급)	◦ 서울시 생활임금 반영

○ 원고료

- 지급대상

기준	세부 요건
지급대상	원고 집필자
대상원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의·교재 편찬(부교재 포함)·발간물 등 제출 원고</li> <li>각종 세미나, 토론회 등 행사(교육)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</li> <li>순수 창작물, 연재물, 전문가 지식수록, 전문가 칼럼, 평론 등</li> </ul>

- ▶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(다만,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)

- 원고 규격별 지급액

원고 형식	지급 규격	지급액
A4 용지	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/꼬리말 15,	42,000원 (원고지 3.5매 기준)
	1면 기준 300단어	
파워포인트	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	2면당 42,000원
원고지	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	1매당 12,000원

- ▶ 원고료 지급액은 원고지 200자 원고지 1매를 기준
- ▶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%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- ▶ 그림,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연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○ 홍보간행물

※ 문화체육관광부 <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> 참고

- 세부내용 확인: [\[홍보간행물 지급규정\]](#) 클릭 → 첨부되어있는 한글파일 확인
- ▶ 대상항목: 만화료, 일러스트(삽화), 사진료, 편집료

○ 통역료 / 번역비

- 한국외국어대학교 통·번역센터 최저기준 준용
- ▶ 세부내용 확인: [\[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링크\]](#) 클릭

○ 대관료

- 싹터 프로젝트에 한해 대관료 책정이 가능하며, 세미나실, 회의장, 공연장 등 대관의 경우 대관사의 책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되,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(예: 학교시설, 구민회관, 공공 문화시설 등)을 우선 활용

## 2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

### □ 사용 가능한 항목

세목	용도
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업별 일시적 인건비</li> <li>- 프로젝트 운영 및 진행 관련 자문회의 수당</li> <li>- 무대인건비, 단기근무자 인건비</li> </ul> ※ 사례비는 프로젝트 실행비의 30% 이내 책정 가능하며 재단과 협의
홍보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</li> <li>· 광고비, 홍보물, 현수막 제작 등 ※ 단순 성과보고용 책자 제작 사양</li> </ul>
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프로젝트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구입 가능</li> <li>※ 자산 취득성 물품 구매 불가(예: USB, 의자, 프로젝터 등)</li> </ul>
다과/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인기준 : 다과 5,000원/식비 10,000원</li> </ul>
기타	재단과 협의

### ※ 사용 불가 경비

인정불가 경비	세부 내역
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, 여비(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) 등</li> <li>-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</li> </ul>
자산취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) 헤드셋, USB(외장하드), 테이블, 의자, 프로젝터 등</li> <li>※ 지원금 인정 가능 비용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연구·프로젝트 진행에 직접 필요한 공연의상, 전시에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 등 리서치·공연·작품·전시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비는 재료비로 간주함</li> <li>② 연구·공연·작품·전시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구입비는 개별 가격 10만원 미만의 소모품비 등으로 간주하며 해당 물품만 인정</li> <li>③ 상기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취득성 경비는 인정하지 않음.</li> </ol> </li> </ul> <p><b>가급적 대여, 임차 방식 사용</b></p>
지원금 및 상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의 전반과 관련한 재교부성 지원금</li> <li>- 대가 없는 상금</li> </ul>
경품/기념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품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활동의 대가가 아닌 단순 경품 및 기념품</li> <li>* 스티커, 배지 등 행사의 홍보 물품 차원으로 활용되거나, 관객 참여형 등 행사 물품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사전 문의</li> </ul>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</li> <li>- 지원금 카드 사용제한 업종&lt;불임3. 지원금관리 체크 카드 사용제한 업종&gt; 참고</li> <li>- 수수료 불가(문자서비스, 공인인증서 발급 등), 세금 납부 시 책정된 가산세</li> </ul>